

(지역별 시설분류확인서 일련번호 기입(예 : 서울중로시설-00001))

**시설분류확인서**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‘집합금지’ 또는 ‘영업시간 제한’ 또는 ‘시설 내 인원제한’ 조치 이행 대상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사업자등록번호		개업연월일	
대표자 성명		연락처 (휴대전화)	
업체명			
사업장 주소			
시설 유형	※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공되는 ‘방역조치 대상 시설 목록’에서 선택하여 기입		

2021.10.1.일부터 12.31.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, 「소상공인 손실보상」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**자치단체장 명의 직인**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